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4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이종배·박덕흠·김성원

강승규 · 서천호 · 신동욱

김소희 • 정동만 • 성일종

김미애 · 이종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,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약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,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도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제4항 및 제5항"을 "제4항·제5항 및 제7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5항"을 "제5항·제7항"으로 한다.
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⑥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
	해당 과세기간에 「사회서비스
	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
	법률」 제6조에 따라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를 이
	용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한
	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
	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⑧ 제1항· <u>제4항 및 제5항</u> 에	⑧ <u>제4항·제5항 및 제7</u>
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	<u>ত্</u> ট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, 공제	
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	
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	
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	
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	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⑩ 제1항·제4항· <u>제5항</u> 및 제	⑩ <u>제5항·제7항</u> -
8항에 따른 공제를 "특별소득	
공제"라 한다.	

① (생략)

① (현행과 같음)